
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이철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26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5.

발 의 자 : 이철규 · 구자근 · 김기현
서일준 · 강승규 · 박준태
서명옥 · 김소희 · 이양수
유상범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,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·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수소특화단지는 지정 이후에도 산업환경의 변화, 수소경제 관련 정책의 변경, 기반시설 구축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정 당시의 면적·위치·사업시행기간·시행방법 등 지정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, 현행법은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정 이후 여건 변화에 따라 지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.

이에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수소특화단지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가

능하게 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의2 신설).
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2조의2(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의 변경) ①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22조에 따른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22조의2(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의 변경) ①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22조에 따른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.</u></p>